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용어에 맞게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의 변경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제명을 「주소정보시설규칙」으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용어를 정리함

나.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의 구분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표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1) 도로명판 등의 제작형식에 따른 구분 중에서 현행 판자형을 기본형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조명형 도로명판”의 유형을 전기, 태양열,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2) 기초번호판의 설치유형에 따른 구분 중에서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을 “지주등용 기초번호판”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이 사물주소 부여 대상에 해당 됨에 따라 기초번호판 설치 유형(장소)의 “승

강장용 기초번호판”을 삭제함.

- 3) 자율형 건물번호판 중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경우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30센티미터·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지점번호판 표시사항, 제작기준 등 마련(안 제24조 및 제25조)

-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때 표기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별표 16)
- 2) 국가지점번호판의 모양은 사각형의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두께는 2밀리미터의 알루미늄판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표지의 재질은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으로 하는 등 제작기준을 신설함

라. 사물주소판 표시사항, 제작기준 등 마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1) 사물주소판에는 한글과 로마자 도로명, 사물번호를 표시하되, 건물번호판과의 혼선이 없도록 시설물 유형과 사물주소의 활용방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사물주소판의 구조와 세부 규격을 새로 정함(별표 18, 별표 19)
- 2)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조 및 제작기준,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번호판을 준용하도록 함
- 3) 자율형 사물주소판은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한글 도로명과 사물번호, 시설물의 유형은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

마. 입체도로 등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1) 입체도로, 내부통로, 터널 등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상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바. 주소정보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주소정보시설규칙”으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제8조의7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크기”를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할 사항, 규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을”을 “주소정보시설을”로,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에”를 “주소정보시설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을 “고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도로구간의 도로명과 기초번호, 진행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6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안내하기”를 “이용하여 건물등의 위치를 안내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3호) 중 “도로명주소안내도를”을 “주소정보안내도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4호) 중 “건물이 없는 장소나 교통신호등, 가로

등”을 “교통신호등, 가로등, 전주”로 한다.

4. 국가지점번호판: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하여 산악 지역 등에서 일정한 지점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5. 사물주소판: 도로명과 사물번호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제4조 앞에 “제2장 도로명판”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명판”을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명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을 “도로명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을 “안내하려는”으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을 각각 “도로명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판자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야광형)”을 “(전기, 태양열,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을 “도로명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시하는”을 “표시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시장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을 “도로명판”으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을 “세부규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한길체”를 “한길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2조의2”를 “법 제29조”로,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다. 다만, 조명형 도로명판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도로명판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도로명판 등의 제작기준)”을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명판 등”을 “도로명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도로명판의 두”를 “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명판의 내구성:”을 “내구성:”으로, “제작하되”를 “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명판의 글자:”를 “글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명판의”를 “도로명판에 사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지번호가 있는”을 “가지번호를 붙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위치”를 “세부적인 설치위치”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주·도로시설물”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등, 그 밖에 도로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설치하되,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고,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도의 윗부분에”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에도 가능하면 같은”을 “때에는 비슷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시설물을”을 “제1항제1호를”로 한다.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보도의 윗부분

나. 차량용 도로명판: 차도의 윗부분

제11조 앞에 “제3장 건물번호판”을 삭제한다.

제21조, 제22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번호판”을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부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까지 중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을 각각 “건물번호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판자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용도별 종류는 별표 12와 같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제23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17조, 제3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지역안내판”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30조를 제32조로 한다.

에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 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때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경우에 한한다)
4. 사물번호
5. 시설물 유형
 - 가. 한글 시설물 유형
 - 나. 영문 시설물 유형
6. 사물주소의 활용방법

② 사물주소판의 구조는 별표 18와 같고, 세부규격은 별표 19과 같다.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①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조 및 제작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 유형의 경우에는 글씨체 및 색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때의 위치 및 높이 등은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내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판을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8조(자율형 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① 자율형 사물주소판은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율형 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제2호, 제5호나목 및 제6호는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지역안내판의 종류 등)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형 안내판: 대로의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안내판
2. 중형 안내판: 로(路)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3. 소형 안내판: 길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② 지역안내판의 구조 및 종류별 규격은 별표 20 및 별표 21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안내판의 구조·규격 등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26조)의 제목 “(기초번호판의 표시 사항)”을 “(기초번호판의 표시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의 사항은 표시를”을 “제4호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초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9와 같고, 세부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18조(중전의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릅스(Rix)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1과”를 “별표 15와”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를 “따른 색도 범위”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5조)제2항 중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건물번호판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반영하거나 예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반영하려거나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본형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를 “세부”로, “색채와”를 “색채 등을”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설치해야”를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쉽게 건물번호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건물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를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착방법”을 “설치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된 용도에 맞는 건물번호판으로 부착”을 “용도에 맞도록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구조상”을 “구조 등을 고려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안업체 간판, 상업용 표지판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건물번호판이 쉽게 눈에 띄게 할 것

④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로(路)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중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건물번호판등”을 “건물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물번호판등은 제12조제2항 별표 10”을 “건물번호판은 별표 14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10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등”을 “건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물에”를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로, “포함하여 설치하는”을 “표기하는”으로,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의 내부 면적이 제1호에 따른 면적과 같거나 크게”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의”를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로, “제16조”를 “제21조”로 한다.

제30조(중전의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3조(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설치 규격 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정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지역안내판의 표시 사항)”을 “(건물번호판의 표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물번호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제17조(종전의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건물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13과 같고, 세부규격은 별표 14와 같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 기준,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입체도로 및 내부통로에 설치하려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2. 입체도로 및 내부통로에 인접한 건물등 및 시설물에 설치하려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3. 터널 등에 설치하려는 기초번호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이 용이하게 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지역안내판의 설치)”를 “(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때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중전의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번호판”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소에 따른 다음 각 목의”를 “유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을 “안내하려는”으로, “다음 각 목의 기초번호판”을 “기초번호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작 형식에 따른 기초번호판

제11조(중전의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판자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양: 가로형과 세로형의 사각형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2. 재질: 두께 2밀리미터의 알루미늄판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할 것
3. 표지의 재료: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4. 글씨체: 한글의 경우에는 릭스(Rix)맑은고딕B를, 숫자 및 로마자의 경우에는 한길체를 적용할 것
5. 색상: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할 것. 이 경우 바탕색의 색도 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앞에 “제5장 기초번호판 등”을 삭제한다.

제13조(중전의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레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할 때에는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레스 스틸 압출판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중전의 제28조)의 제목 “(기초번호판의 설치기준)”을 “(기초번호

판의 설치장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서 정하는”을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신호등, 가로등”을 “설치된 교통신호등, 가로등, 전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승강장, 관광안내소, 매표소, 정자(亭子), 비닐하우스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를 “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29조)제1항제2호 중 “설치높이는 지면”을 “지면”으로, “거리”를 “높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설치간격은 20미터의 기초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제32조(중전의 제30조)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를 “도로명판의 크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를 폐지한다.

별표 ““제2외국어 병기시 [별표 1]제8호”를 “제2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때에는 제8호”로 하고, 같은 호 중 “로이상”을 ““로”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로” 및 “로” 급 도로의 종속구간에서 차량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의 크기를 준용하여 설치 가능
별표 2 제7호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방향: 해당 도로의 방향을 나타내며, 한복 저고리의 형상으로 도로명판의 형태를 부드럽게 함.
별표 4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2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2조제4항 관련)”을 “(제7조제2항, 제1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중 “따른다”를 각각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차로

별표 6 제1호가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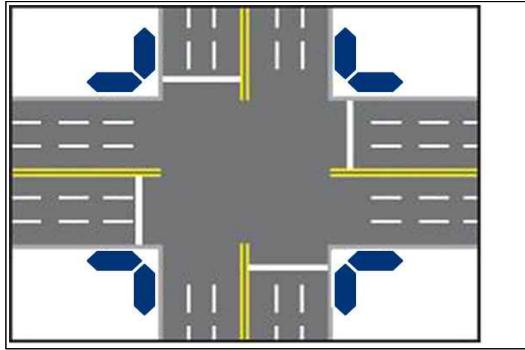
별표 6 제1호가목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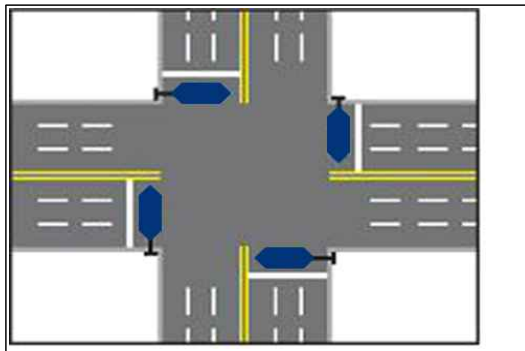
별표 6 제1호가목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별표 6 제1호가목 보행자용의 교차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차량용의 교차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ㅏ’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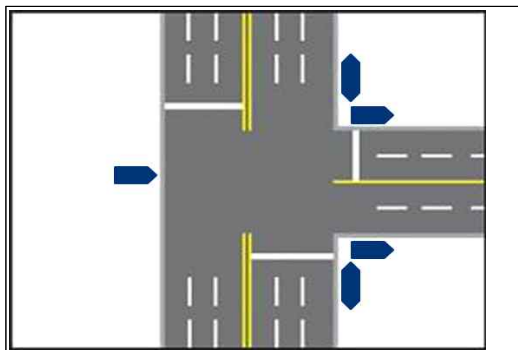
별표 6 제1호나목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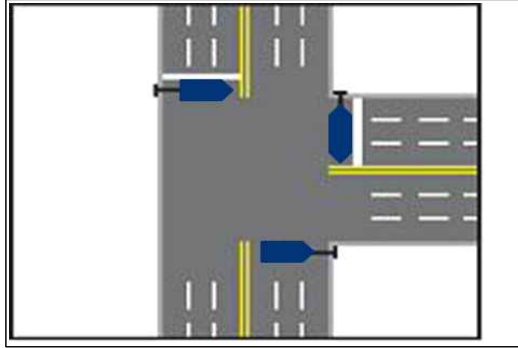
별표 6 제1호나목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별표 6 제1호나목 보행자용의 교차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차량용의 교차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T’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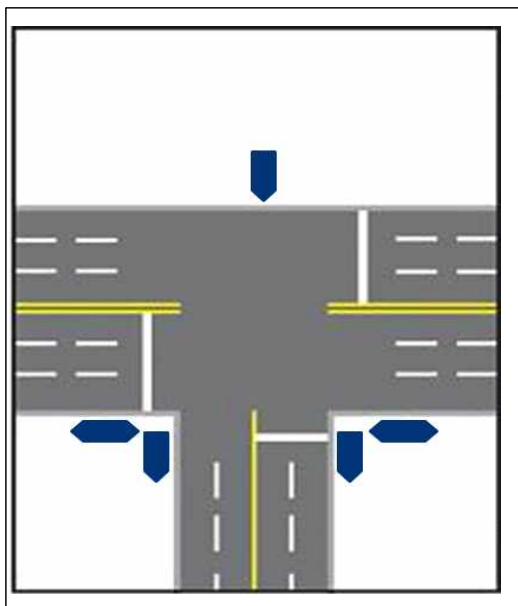
별표 6 제1호다목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별표 6 제1호다목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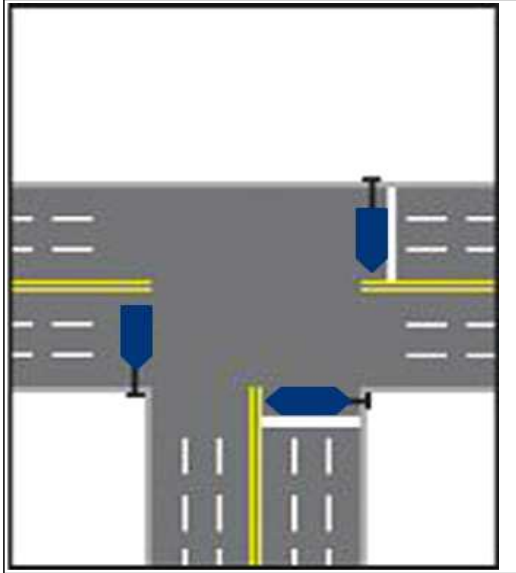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별표 6 제1호다목 보행자용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차량용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K'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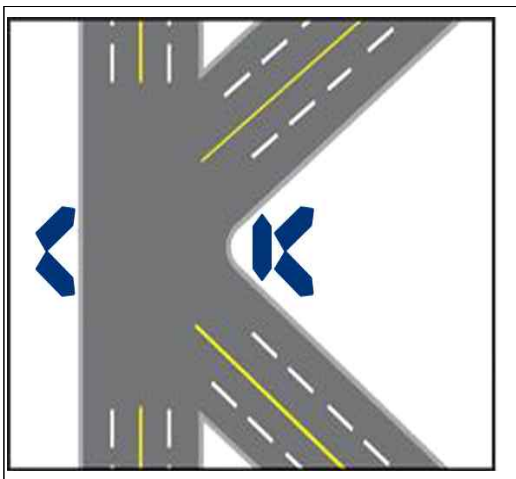
별표 6 제1호라목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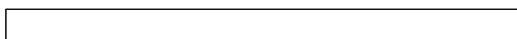
별표 6 제1호라목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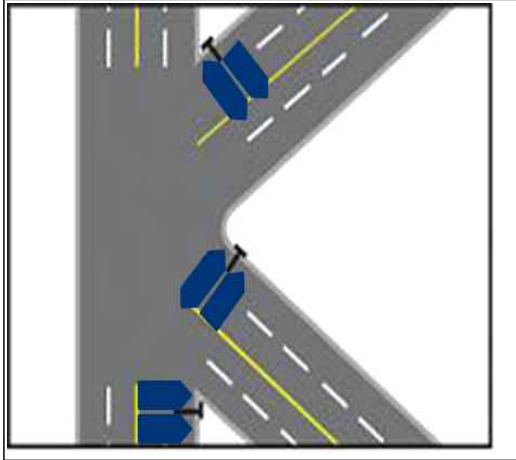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별표 6 제1호라목 보행자용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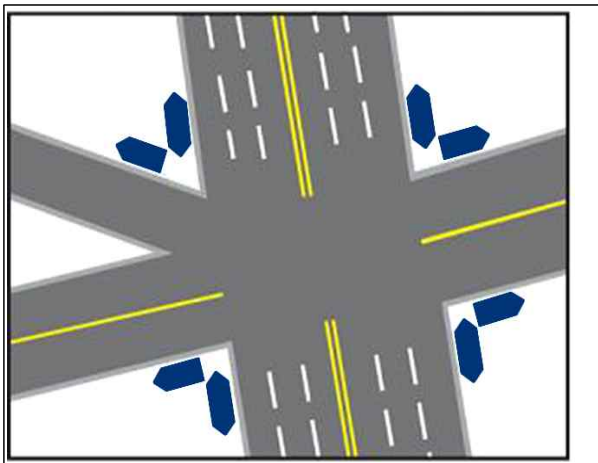
별표 6 제1호라목 차량용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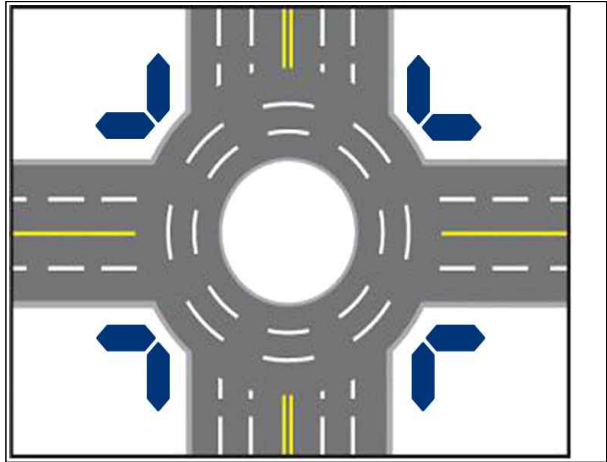
별표 6 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바목(종전의 마목) 보행자용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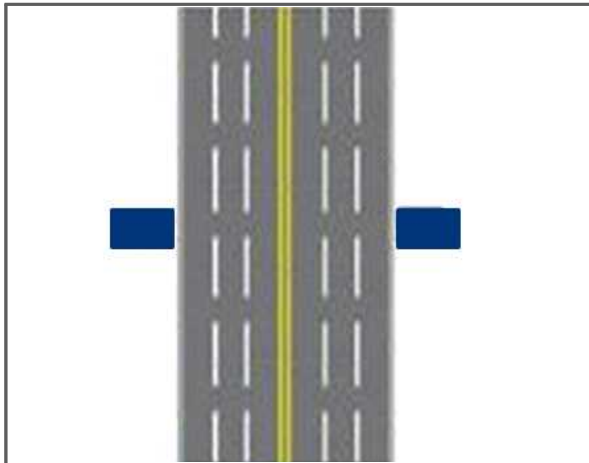


별표 6 제1호사목(종전의 바목) 표 외의 부분 중 “회전형”을 “회전”으로 하고, 같은 목 보행자용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6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도로의 경우”를 “도로”로 하고, 같은 호 차량용란에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본형	조명형
상단 부분		

별표 14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 및 별표 7의5로 하고,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2의 제목 중 “(제25조제2항 관련)”을 “(제11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2의 승강장용을 삭제한다.

별표 7의3의 제목 중 “(제26조제2항 관련)”을 “(제12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4의 제목 중 “(제26조제2항 관련)”을 “(제12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4(중전의 별표 16)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7의4] <개정 2021. 00. 00.> <중전의 별표 16에서 이동>

별표 7의4(중전의 별표 16)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7의4] <개정 2021. 00. 00.> <중전의 별표 16에서 이동>

별표 7의4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6의 제목 중 “(제20조제2항 관련)”을 “(제2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5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7의 제목 중 “(제21조 관련)”을 “(제2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건물번호판의 종류(제11조제2항 관련)”를 “건물번호판의

용도별 종류(제16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12조제2항 관련)”을 “(제1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12조제2항 관련)”을 “(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로 또는 로인 도로구간에 포함되는 종속구간의 건물등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길인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으로 설치 가능
별표 11의 제목 중 “(제13조제2항 관련)”을 “(제18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서체란 “서체”를 “글씨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서체”를 “글씨체”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체”를 “글씨체”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표 16 및 별표 17로 하고,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로형

(단위 : mm)



2. 세로형

(단위 : mm)



3. 표시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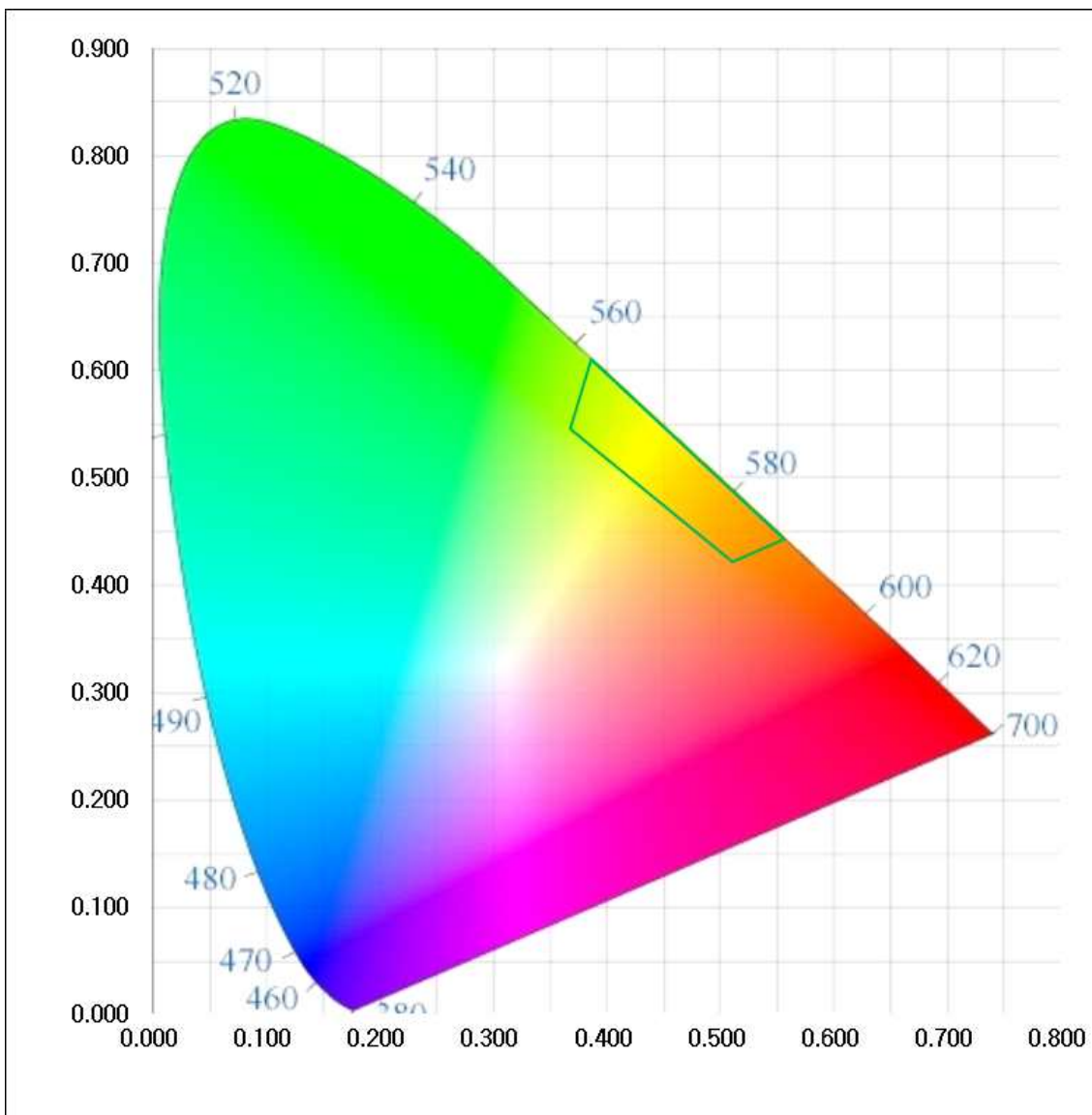
- 1) 시설물 명칭: 국가지점번호
- 2) 국가지점번호: 한글(로마자를 포함)과 아라비아숫자
- 3) 설치 또는 관리기관의 명칭
- 4) 긴급 신고 연락처 등

[별표 13]

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

색도 좌표							
1		2		3		4	
X	Y	X	Y	X	Y	X	Y
0.387	0.610	0.369	0.546	0.512	0.421	0.557	0.442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색계



[별표 14]

사물주소판의 구조(제26조제2항 관련)



1. 한글 도로명: 해당 도로의 한글 도로명을 안내함.
2. 로마자 도로명: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도로의 로마자 도로명을 안내함.
3. 건물번호 또는 사물번호: 해당 도로에서 현 위치를 나타냄.
4. 한글 사물유형: 해당 사물의 한글 유형
5. 영문 사물유형: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사물유형을 영문으로 안내
6. 사물주소의 활용방법: “112, 119 신고 시 내 위치는 “시·군·구 + 도로명 + 사물번호(건물번호) + 번 + 시설물 유형” 입니다.” 로 안내할 수 있도록 표시함
7. 모퉁이: 남색 테두리와 바탕은 주위에 있는 다양한 물체와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물주소판의 형태를 부드럽게 하는 곡선으로 함

[별표 15]

사물주소판의 세부 규격(제26조제2항 관련)

1. 기본형



2. 확장형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120g/㎡)]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

국가지점번호		시설물 종류(명칭)		검증기관명	
설치기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설 치 일		검증일		
좌표 및 경위도	X		경도		
	Y		위도		
	Z		높이		
설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근경사진)		(원경사진)		(약도)	
조사년월일	조 사 자		조사내용		
	직급	성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u>	<u>주소정보시설규칙</u>
<u>제1장 총칙</u>	<u><삭 제></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2조제12호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할 사항, 규격</u>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교차로”란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지점을 말한다.	<u><삭 제></u>
2. “지주”(支柱)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또는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우는 기둥을 말한다.	<u><삭 제></u>
3. “시각경계선”이란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	3. ----- <u>주소정보시설을</u> ----- ----- ----- <u>주소정보시설에</u> -----

<u>호판에</u>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 -----.
4.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u>고시한</u> 산업표준을 말한다.	4. ----- ----- ----- <u>고시된</u> ----- -----.
5. “도로시설물”이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u>교통신호등·도로표지판·전선주·가로등·전신주</u> 등을 말한다.	<삭 제>
6.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이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 또는 조형물(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 조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구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로명판: <u>도로명과 기초번호</u>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2. 건물번호판: 도로명과 건물번	제3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구분) ----- -----. 1. ----- <u>도로구간의 도로명과 기초번호, 진행방향</u> ----- ----- 3. -----

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
설치하는 표지판

<신 설>

<신 설>

3. 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안내
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
하는 알림판

4. 기초번호판: 도로명과 기초번
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장소나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
과 같은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
하는 표지판

제2장 도로명판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
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이용하여 건물등의 위치를
안내하기 -----

4. 국가지점번호판: 국가지점번
호를 이용하여 산악 지역 등
에서 일정한 지점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
하는 표지판

5. 사물주소판: 도로명과 사물번
호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위치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
· 설치하는 표지판

6. -----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

2. -----
----- 교통신호등, 가
로등, 전주 -----

<삭 제>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
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9조제1항 및 「도로명주
소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1.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u>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u> 가. ~ 다. (생략) 2. <u>사용 대상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u> 가. · 나. (생략) 3. 제작형식에 따른 <u>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u> 가. <u>판자형</u> 도로명판 나. <u>조명형(야광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도로명판 4. 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u>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u> 가. · 나. (생략) ② (생략)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 사항) ① 도로명판에 <u>표시하는</u>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기초번호(이면도로용 도로명판 및 예고용 도로명판의 경우는 <u>제외한다</u>)	<u>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명판</u>----- --. 1. ----- <u>도로명판</u> 가. ~ 다. (현행과 같음) 2. <u>안내하려는</u> --- <u>도로명판</u> 가. · 나. (현행과 같음) 3. ----- <u>도로명판</u> 가. <u>기본형</u> ----- 나. -----(<u>전기, 태양열, 야광등을 이용하는 것</u>----- 4. ----- <u>도로명판</u> 가. · 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 사항) ① ----- <u>표시할</u>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u>제외할 수 있다</u>----- -----
--	--

4. 5. (생 략)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구조는 별표 2와 같고,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생 략)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남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

4. 5. (현행과 같음)

6.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② 도로명판-----
----- 세부규격-----.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길체-----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29조-----
-- 중앙주소정보위원회-----
-----.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

-----.

<단서 삭제> -----

----- . 한다. 다만, 조명형 도로명판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② 도로명판에 -----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도로명판 등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 등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로명판의 두께 및 강도: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제작할 것. 다만, 벽면, 기둥, 창호(窓戶)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밀리미터 이상으로 제작하되, 요철 등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도로명판의 내구성: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제작할 당시 성능의 80퍼센트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하되, 반사지나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탈색·갈라짐·주름·깨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작할 것

3. 도로명판의 글자: 한국산업표

-----.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
-----.

-----.

1. 두-----

--.

-----.

2. 내구성: -----

----- 하고-----

3. 글자: -----

준규격(KS)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A3507)를 사용할 것

4. 지주 및 도로명판의 부속물: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제품을 사용하되, 지역별 기본 풍속(風速) 및 최대 풍속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할 것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가 있는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의 장소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4. -----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② -----

-- 가지번호를 붙인 -----

-----.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① -----

-- 고려하여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
명판의 설치위치는 별표 6과 같
다.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설치한다.

1. 지주·도로시설물 또는 벽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 (생략)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고,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도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신설>

<신설>

4. (생략)

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
로명판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
능하면 같은 높이로 설치할

③ -----
----- 세부적인 설치위치-----
--.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
등, 그 밖에 도로시설물 -----

2. (현행과 같음)

3. -----
----- 다음 각 목의 방법으
로 -----

-----.

-----.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보도
의 윗부분

나. 차량용 도로명판: 차도의
윗부분

4. (현행과 같음)

5. -----
----- 때에는 비슷
한 -----

것

②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도로명
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
다.

제3장 건물번호판

제11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
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건물등의 용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가. ~ 다. (생략)
2. 도로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
의 건물번호판
가.·나. (생략)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
의 건물번호판
가. 판자형 건물번호판
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건물번
호판은 별표 8과 같다.

제12조(건물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

② 제1항제1호를 -----

--.

<삭 제>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물번
호판--.

1. ----- 건물
번호판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건물번호판

가.·나. (현행과 같음)
3. ----- 건물번호판

가. 기본형 -----
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용도별 종류는 별표 12와 같다.

<삭 제>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
할 수 있다)

4. 시각 경계선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9와 같고, 건물번
호판의 세부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③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
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
한 도로구간의 도로 구분에 따
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
· 로(路)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
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
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는 릭스(Rix)체로 한다. 다만,
릭스(Rix)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릭스(Rix)체
및 유사 글씨체는 별표 11과 같
다.

제14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 하되, 릭스(Ri
x)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유사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
다. <단서 삭제>

② -----
----- 별표 15와 --
--.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

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한다.

1.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생 략)

②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건물번호판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예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규격, 글씨체 및 색채와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제16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우측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쉽게 건물번호를 찾아볼 수 없는 경

호와 같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색도 범위-----.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영하려거나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본형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 세부 ----- 색채 등을 -----.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① -----

----- 설치하여야 --.

② -----
----- 건물
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우에는 진입도로(건물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입구마다 또는 옥외 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건물번호판의 부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등의 주된 용도에 맞는 건물번호판으로 부착할 것

2. 설치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상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 곳에 설치한다.

3. 보안업체의 간판, 상업 간판, 우편함 등의 크기가 건물번호판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이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설치하여 건물번호판이 쉽게 눈에 띄게 할 것

4. 건물번호판의 바탕색과 벽면의 색채가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부근의 다른 색채의 벽면에 설치할 것

<신 설>

에는 진입도로 -----

-----.

③ ----- 설치 방법-----
-----.

1. ----- 용도에 맞도록 설치

2. -----
----. ----- 구조 등
을 고려할 때 -----

-----.

3. 보안업체 간판, 상업용 표지판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건물번호판이 쉽게 눈에 띄게 할 것

<삭 제>

④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

제17조(자율형 건물번호판등)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

한 도로구간의 도로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로(路)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의 규격 등) ① 제17조에 따른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은 제12조제2항 별표 10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2. 별표 10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크기는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

제22조(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의 규격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건물번호판-----
-----.

1. ---- 건물번호판은 별표 14의 -----

2. 건물등-----

한다)으로 할 것

3.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의 내부 면적이 제1호에 따른 면적과 같거나 크게 할 것

② (생략)

③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의 기준 및 방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신 설>

3.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

----- 표기하는 -----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 -----
----- 제21조 -----

제23조(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설치 규격 등

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정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4장 지역안내판

제19조(지역안내판의 종류) 지역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안내판: 대로인 도로구간, 공원, 광장, 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관광지, 마을 입구 또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장소에 설치하는 지역안내
판

2. 중형 안내판: 로(路)인 도로
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
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지역안내판

3. 소형 안내판: 길인 도로구간
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
소에 설치하는 지역안내판

제20조(지역안내판의 표시 사항)

① 지역안내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

2. 기초번호

3. 주변 도로명

4. 주요 건물등의 건물번호

5. 설치관리자의 연락처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내판의
구조는 별표 12와 같다.

제21조(지역안내판의 규격) 지역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건물번호판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표시한다.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건물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1
3과 같고, 세부규격은 별표 14
와 같다.

<삭 제>

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1
3과 같다.

제22조(지역안내판의 글씨체 및
색채) ① 지역안내판에 사용하
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② 지역안내판의 바탕 중 머리
부분과 강조 부분은 노란 주황
색으로 하고, 몸체 부분은 검은
초록색으로 한다.
③ 지역안내판에 사용하는 글자
색은 흰색 또는 노란 주황색으
로 하고, 지도는 단색조(單色調)
로 표현하되 강조할 부분은 다
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제23조(지역안내판의 제작기준)
① (생 략)
② 시장등은 해당 지역안내판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예술적
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
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제20조에서 제22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규격·글씨체

<삭 제>

제30조(지역안내판의 제작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및 색채와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지역안내판의 설치) 지역 안내판의 설치위치와 종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 기준,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입체도로 및 내부통로에 설치하려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2. 입체도로 및 내부통로에 인접한 건물등 및 시설물에 설치하려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3. 터널 등에 설치하려는 기초번호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이 용이하게 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 사항 등)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때

<신 설>

<신 설>

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양: 가로형과 세로형의 각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2. 재질: 두께 2밀리미터의 알루미늄판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할 것

3. 표지의 재료: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신 설>

록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4. 글씨체: 한글의 경우에는 릭스(Rix)맑은고딕B를, 숫자 및 로마자의 경우에는 한길체를 적용할 것

5. 색상: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할 것. 이 경우 바탕색의 색도 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 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때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경우에 한

<신 설>

<신 설>

한다)

4. 사물번호

5. 시설물 유형

가. 한글 시설물 유형

나. 영문 시설물 유형

6. 사물주소의 활용방법

② 사물주소판의 구조는 별표 18와 같고, 세부규격은 별표 19과 같다.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①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조 및 제작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 유형의 경우에는 글씨체 및 색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때의 위치 및 높이 등은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내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판을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8조(자율형 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① 자율형 사물주소판은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신 설>

한다.

② 자율형 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제2호, 제5호나목 및 제6호는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지역안내판의 종류 등)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형 안내판: 대로의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안내판

2. 중형 안내판: 로(路)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3. 소형 안내판: 길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② 지역안내판의 구조 및 종류별 규격은 별표 20 및 별표 21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제5장 기초번호판 등

제25조(기초번호판의 종류)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장소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초번호판
가. ~ 다. (생략)
라. 승강장용 기초번호판
2. 사용 대상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초번호판
가.·나. (생략)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초번호판
가. 판자형 기초번호판
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기초번호판의 크기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가 있는 경우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안내판의 구조·규격 등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①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초번호판-----
-----.

1. --- 유형에 따른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2. 안내하려는 --- 기초번호판

가.·나. (현행과 같음)
3. 제작 형식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 기본형 -----
나. (현행과 같음)

②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에는 해당 표지에 맞도록 크기와 비율을 조정하거나 해당 표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가 포함된 일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26조(기초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15와 같고,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제27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스테인레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할 때에는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레스 스틸 압출판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 사항 등)

① -----
-----.
---- 제4호는 -----
-----.

1. ~ 4. (현행과 같음)

② 기초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9와 같고, 세부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① -----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레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할 때에는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레스 스틸 압출판을

<u>제28조(기초번호판의 설치기준)</u>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u>호에서</u> <u>정하는</u> 장소에 설치한다. 1.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 내에 <u>교통신호등, 가로등</u> 등 도로시설물이 설치된 장소 2. <u>승강장, 관광안내소, 매표소,</u> <u>정자(亭子), 비닐하우스 등 사</u> <u>람이 모이는 장소나</u>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3. 그 밖에 <u>시장등이</u> 필요하 다 고 인정하는 장소	<u>사용할 수 있다.</u> <u>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u> - ----- <u>호의</u> ---- -----. 1. ----- -- <u>설치된 교통신호등, 가로</u> <u>등, 전주</u> ----- 2. <u>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u> <u>에서</u> ----- ----- ----- -- 3. ----- <u>특별자치시장·특별</u> <u>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u> <u>구청장</u>-----
<u>제29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u>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생 략) 2. <u>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기</u> <u>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거리</u> 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u>설치간격은 영 제7조의5제1</u> <u>항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u>	<u>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u> ① ----- -----. 1. (현행과 같음) 2. <u>지면</u>----- ----- <u>높이</u>----- ----- ----- -- 3. <u>설치간격은 20미터의 기초간</u> <u>격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u>

<u>역의 실정 및 도로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u>	<u>실정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u>
<u>② 기초번호판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별표 17과 같다.</u>	<u>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u>
<u>제30조(시행세칙)</u>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u>도로명주소안내시설</u>의 설치 및 <u>관리</u>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u>제32조(시행세칙)</u> ----- ----- <u>주소정보시설</u>----- ----- <u>관리 등</u>----- ----- --.